

전주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260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이 2020. 3. 3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0. 5. 29. 접수 제150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음에 있어 C과 피보험자를 D 주식회사로 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00. 3. 17.경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D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C에 대하여 '7,493,880원 및 그 중 2,755,297원에 대한 2004.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E의 소유였는데, E은 2020. 3. 30.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 C, F, G, H이 있었다.

다. 피고와 C은 2020. 3. 30.경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C의 1/5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같은 날 나머지 상속인들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2020. 5.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5의 법정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있기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5 법정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긴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동생인 C의 채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C과 형제 사이로서 C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스스로도 C이 신용불량자라서 그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 5. 29.

마쳐졌으나, 피고가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시기는 그로부터 두 달가량 지난 2020. 7. 27.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부 동 산 목 록

1. 전라북도 김제시 I 대 146㎡
2. 전라북도 김제시 J 대 17㎡
3. 전라북도 김제시 I, J에 있는 K동호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L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84.6㎡, 끝.

